

별첨 1 분야별 가점 항목 및 기준

유형	내용	대상	전형	가점								
취업지원 대상자 (보훈)	▪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 제 16조 ▪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▪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▪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▪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▪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등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※ 관련 법령에 의거, 법정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최종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)	공통	필기 서류 면접	5점 /10점								
저소득층	▪ 거주지 해당 시.군.구.청에 저소득층 등으로 등록된 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	공통	서류	2점								
지역인재	▪ 지역인재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한 비수도권) 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,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 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	공통	서류	1점								
한국사	▪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	공통	서류	1점								
우수인턴	▪ '25년도 IITP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중 성과평가 우수자 (가점 대상자)	공통	서류	3점								
자립준비 청년	▪ 자립 준비 청년으로 자립수당 수급 확인이 가능한 자 -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보호 종료아동 중 자립 수당 수급자 확인을 받은 자	공통	서류	2점								
청년	▪ 「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」에 따른 청년 * 15세 이상 34세 이하(접수 마감일 기준) 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응시연령 상한 연장)에 따라, 제대군인의 경우,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연장(최고연령은 만 37세로 한정) 1.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3세 2.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2세 3.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1세	공통	서류	3점								
TOPCIT	▪ SW역량검정시험(TOPCIT) 정기평가 성적 우수자 (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 ※ https://www.topcit.or.kr 참조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정기평가 성적</th></tr><tr><th>300점~399점</th><th>400점 이상</th></tr><tr><td>가점</td><td>2점</td><td>3점</td></tr></table>	구 분	정기평가 성적		300점~399점	400점 이상	가점	2점	3점	사업관리 장애 (사업관리)	서류	2점/ 3점
구 분	정기평가 성적											
	300점~399점	400점 이상										
가점	2점	3점										
장애인	▪ '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'에 의한 등록 장애인	사업관리 시설관리 (기계)	서류	5점								